

보증신용장거래에서 지급금지명령의 적용에 관한 분쟁사례연구*

강원진** · 이상훈***

〈 목 차 〉

- I. 서론
- II. 보증신용장거래에서 지급금지명령의 필요성
- III. 지급금지명령 적용의 준거규정
- IV. 지급금지명령 적용 사례
- V. 시사점 및 결론

* 이 논문은 2004년 부산대학교 Post-Doc.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무역·국제학부 교수

*** 부산대학교 무역·국제학부 강사

I. 서론

최근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은 국제매매 및 국제건설공사 등에서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 보증신용장은 은행의 보증확약과 서류제시에 의한 지급청구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익자의 부당한 지급청구의 가능성이 높다. 수익자의 부당한 지급청구가 행해진 경우 발행은행과 발행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응책은 사기원칙의 적용에 따른 발행은행의 지급거절이라 할 수 있으며, 발행은행의 지급거절에 적법성을 부여하는 수단이 바로 법원에 의한 지급금지명령이라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신용장거래에서의 사기원칙의 적용과 그에 따른 지급금지명령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있었으나, 대부분 화환신용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증신용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¹⁾ 그러나 수익자의 부당한 지급청구는 화환신용장보다는 보증신용장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증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지급금지명령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증신용장거래당사자에게 지급금지명령의 적용에 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나아가 수익자의 부당한 지급청구와 그에 따른 지급금지명령에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원활한 해결에 일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보증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수익자의 부당한 지급청구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지급금지명령의 실질적인 적용에 관하여 사례분석을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지급금지명령이 형평법에 의한 구제방법으로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여부가 결정되므로 사건

1) 보증신용장거래에서의 지급금지명령에 관한 국내의 주요한 연구로는 김순자의 연구(1998) 및 조용균의 연구(1999)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급금지명령보다는 보증신용장거래에서의 사기원칙의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사례는 국내의 경우 보증신용장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보증신용장거래가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의 사례 중 1990년대 이후의 최근 사례를 분석하였다.

II. 보증신용장거래에서 지급금지명령의 필요성

1. 금지명령의 개념

금지명령(injunction)²⁾이란 형평법의 구제수단으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서 수명자(enjoined party)에게 어떠한 행위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또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금지명령은 정의와 형평을 기준으로 하는 형평법에 따른 구제수단이므로 금지명령의 적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금지명령이 비상구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인하여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금지명령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금지명령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담보금은 향후 금지명령이 부적절하였음이 입증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은 비용 및 손해를 보상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³⁾

2) 국내에서 'injunction'이란 용어는 금지명령, 유지명령, 차지명령, 정지명령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으나, 신용장거래에서 'injunction'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자의 부당한 지급청구에 대한 발행은행의 지급이행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지급금지명령이라고 번역하고 금지명령과 지급금지명령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였다.

3) Brooke Wunnicke & Diane B. Wunnicke, Standby Letters of Credit, John Wiley & Sons, Inc. 1989, pp. 305~306.

한편 금지명령은 형평법에 의한 구제방법이므로 기본적으로 형평법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건으로는 ① 신청인이 본안의 소송 판결에서 승소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⁴⁾, ②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회복불능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것⁵⁾, ③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가 상대방이 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보다 클 것⁶⁾, ④ 금지명령의 허용이 공익에 위배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법원은 금지명령을 허가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요건에 추가하여 제정법의 규정에 따라 구제방법으로서의 적합성이 인정될 것⁷⁾ 등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2. 보증신용장거래에서 지급금지명령 적용의 필요성

회환신용장거래와 동일하게 보증신용장거래에서도 소위 독립성의 원칙은 가장 중요한 거래원칙으로 존중되고 있다. 독립성의 원칙에 의하여 발행은행의 지급의무는 발행의뢰인과 수익자간의 근거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다.⁸⁾ 따라서 수익자의 제시서류와 보증신용장조건이 일치한다면 근거계약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발행은행

4)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 James E. Byrne, "UCC Survey: Letter of Credit", Brooklyn Law Review, Vol. 43, 1988, p. 1377.

5) 회복불능의 손해의 입증이란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발행은행이나 발행의뢰인에게 금지명령 이외에 다른 법률적 구제방법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P. Sigrist, Standby Letters of Credit and Fraud,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990, p. 57.

6) 이 요건은 미국 통일상법전에서도 금지명령의 허용을 위한 요건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UCC 1995, § 5-109(b)(2).

7) UCC 1995, § 5-109(b)(2),(3).

8) David Gray Carlson & William H. Widen, "Letters of Credit, Voidable Preference, and the Independence Principle", The Business Lawyer, Vol. 54, 1999, p. 1661.

은 지급을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보증신용장거래에서는 독립성의 원칙에 의하여 수익자에 의한 부당한 지급청구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는 화환신용장거래에서도 존재하나, 보증신용장거래의 경우 지급청구서류의 특성으로 인하여 수익자의 부당한 지급청구의 위험은 증가된다.⁹⁾ 즉, 보증신용장거래에서는 대부분 수익자가 발행하는 불이행진술서(default statement)만으로 발행은행의 지급이 행해지므로 제3자와의 공모 없이 수익자의 악의적 의도만으로 쉽게 부당한 지급청구가 행해질 수 있다.¹⁰⁾ 이러한 경우 독립성의 원칙에 대한 맹목적인 준수는 부당한 지급청구를 행한 수익자를 보호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법원칙이 사기원칙(fraud rule)이다. 즉, 발행은행에게 일치서류의 이면에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심사를 허용하여 독립성을 악용하는 수익자의 부당한 지급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금지시킬 수 있는 독립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¹¹⁾ 사기원칙에 의하여 발행은행은 수익자가 일치서류를 제시하여도 지급청구에 부당성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 적법하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사기원칙의 적용에 따른 발행은행의 지급거절은 발행은행의 독자적 결정에 의한 지급거절과 법원의 지급금지명령에 따른 지급거절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발행은행은 법원의 금지명령이 없는

9) Michael Stern, "The Independence Rule in Standby Letters of Credit",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 52, Winter 1985, p. 223.

10) 보증신용장거래에서 수익자의 지급청구 서류의 정당성은 오로지 수익자의 정직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Richard J. Driscoll, "The Role of Standby Letters of Credit in International Commerce : Reflection after Iran",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yer*, Vol. 20, 1980, p. 470.

11) Ross P. Burkley & Gao Xiang, "The Development of the Fraud Rule in Letter of Credit Law: The Journey so far and the Road ahead",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23, Winter 2002, pp. 663~664.

경우 독자적 결정에 의한 지급거절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독자적 지급거절은 지급청구의 부당성의 실질적 존재 및 그 입증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¹²⁾ 발행은행이 부당성의 입증에 실패하는 경우 오히려 일치서류에 대하여 부당한 지급거절을 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발행은행의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독자적 지급거절은 발행은행의 권리이므로 발행의뢰인이 지급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지급거절을 요청하는 경우 발행은행은 이러한 요청에 무조건적으로 응할 의무는 없다.¹³⁾ 따라서 수익자의 지급청구의 부당성에 관한 의혹 및 발행의뢰인의 요청이 있다 하여도 발행은행은 그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경우 독자적 지급거절을 꺼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발행의뢰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법원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지급청구의 부당성을 인정하여 발행은행에게 지급금지명령을 내린다면, 이는 발행은행의 지급거절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지급금지명령을 위한 재판과정에서 지급청구의 부당성의 입증책임 역시 발행은행이 아닌 발행의뢰인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발행은행은 소송절차 및 판결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수익자의 부당한 지급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발행은행은 독자적 지급거절보다는 법원의 지급금지명령에 의한 지급거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한편 사기원칙에 의한 지급금지명령의 적용에 있어서 특이한 사실은 영국의 법원은 수익자에 의한 환어음의 발행을 포함한 지급청구 자체를 금지하는 지급금지명령을 주로 내리는 반면에 미국의 법원은 수익자의 지급청구 이후에 발행은행의 지급을 금지하는 지급금지명령

12) James G. Barnes & James E. Byrne, "Letters of Credit: 1998 Cases", *The Business Lawyer*, Vol. 54, 1999, p. 1896.

13) American Law Institute, *UCC Revised Article 5 Letters of Credit*, 1995, Article 5-109, Official Comments 2.

을 주로 내린다는 것이다.¹⁴⁾ 이론적으로 전자는 후자에 비하여 타당성을 가진다. 왜냐 하면, 수익자의 부당한 지급청구는 발행의뢰인과 수익자간의 근거계약에 기초한 것이며, 법원에서도 발행은행의 지급행위의 부당성이 아닌 수익자의 지급청구의 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발행의뢰인과 수익자가 직접적인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¹⁵⁾ 또한 전자의 경우 발행은행이 소송에서 제외됨으로써 독립성의 원칙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줄어들어 신용장거래의 신뢰성도 저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타당성을 떠나서 현실적인 이유에서 전자는 후자에 비하여 적용의 가능성이 떨어진다. 수익자의 지급청구를 금지하는 지급금지명령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발행의뢰인이 수익자의 지급청구 이전에 그 부당성을 인지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수익자에 의하여 작성되는 간단한 서류만으로 지급청구가 행해질 수 있는 보증신용장거래에서 발행의뢰인이 수익자의 부당한 의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법원에 지급금지명령을 신청하기는 어렵다. 또한 수익자의 악의를 인지하였다고 해도 수익자의 지급청구 이전에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까지 입수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이다.

Ⅲ. 지급금지명령 적용의 준거규정

1. 보증신용장 관련법규

국제적으로 보증신용장의 활용이 증대되면서 이를 규율하기 위한

14) Boris Kozolchyk,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in the Americas*, Matthew Bender & Company, 1976, p. 281.

15) 김순자, “스탠드바이 신용장거래에서 사기서류배제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8, 134면.

법규가 계속적으로 제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법규들은 보증신용장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법규¹⁶⁾와 보증신용장을 대상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나 보증신용장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보증신용장에 적용될 수 있는 법규¹⁷⁾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보증신용장통일규칙(ISP98)과 독립적 보증 및 보증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이 발효된 현재 이들 법규가 보증신용장에 관한 법적 해석기준으로 우선적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과 같은 다른 법규들의 경우 원래 보증신용장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보증신용장에 부적절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법적 해석기준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적기 때문이다.¹⁸⁾ 그러나 보증신용장거래의 당사자 또는 법원의 선택에 따라 후자의 법규들은 전자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자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기준으로 인용될 수 있으므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¹⁹⁾

이러한 법규들 중에서 유엔협약과 미국 통일상법전만이 보증신용장거래에서의 지급금지명령에 관한 명시규정을 두고 있다.²⁰⁾ ISP98의 경우 보증신용장을 위하여 제정된 법규이지만 보증신용장의 주요한

16) 여기에는 보증신용장통일규칙(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1998; ISP98)과 독립적 보증 및 보증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1995)이 해당된다; 강원진, 「신용장론」, 제4판, 박영사, 2004, 395~455면 참조.

17) 여기에는 화환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1993: UCP), 계약보증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ntract Guarantees, 1978: URCG), 요구불보증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1992: URDG) 및 미국의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1995: UCC)이 해당한다.

18) John F. Dolan, "Analyzing Bank Drafted Standby Letter of Credit Rules,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ISP98)", Wayne Law Review, Vol. 45, 2000, pp. 1899~1901.

19) 이상훈, "보증신용장의 활용을 위한 법규적 접근",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28권 제2호, 2003, 259~260면.

20) UN Convention Article 19, 20; UCC 1995, § 5-109.

문제점인 수익자의 부당한 지급청구와 발행은행의 지급금지명령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준거법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²¹⁾

2. 독립적 보증 및 보증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의 관련규정

(1) 지급금지명령의 당사자

유엔협약은 제19조 지급의무에 대한 예외(Exception to payment obligation)의 (3)항에서 동조 (1)항에 규정된 발행은행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 있어서 발행의뢰인이 잠정적 법원 조치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²²⁾ 본 조항은 발행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법원의 지급금지명령은 발행의뢰인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지급금지명령의 적용요건

제20조 잠정적 법원 조치(Provisional court measures)에는 법원의 지급금지명령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으로 제19조 1항에 규정된 수익자의 부당한 지급청구의 경우에 있어서 발행의뢰인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이용가능한 유력한 증거를 근거로 법원은 발행은행에 대하여 대금을 보류하는 금지명령을 포함하여 수익자가 지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명령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된 대금을 동결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²³⁾ 본 조항은 수익자에 대한 지급 이전에는 발행은행의 지급을 금지하는 금지명령이 가능하며, 수익자에 대한 지급 이후에는 수익자가 지급받은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금지명령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신용장에 따라 수

21) ISP98, Rule 1.05.

22) UN Convention, Article 19(3).

23) UN Convention, Article 20(1).

익자에게 지급이 이행되면 독립성의 원칙은 지켜진 것이므로 수익자에게 지급된 금액의 동결을 위한 금지명령이 허용에 장애가 되는 근거가 없게 된다.²⁴⁾

또한 규정에 의하면 지급금지명령의 적용요건으로는 제19조 (1)항을 들고 있는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은 ① 서류가 진정하지 않거나 위조된 경우, ② 청구를 위하여 제시된 서류에서 주장된 근거에 의하여 지급이 정당하지 못한 경우, ③ 약정의 형태와 목적에 의하여 판단할 때 청구가 상상할 수 없는 근거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²⁵⁾ 이러한 세 가지 적용요건은 그 성질에 따라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 번째 요건은 제시된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서 ①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요건은 지급청구의 근거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서 ②와 ③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지급금지명령이 적용될 수 있는 수익자의 부당한 지급청구는 수익자에 의하여 제시된 서류 자체의 진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와 수익자가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에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전자는 수익자에 의한 사기(fraud)에 해당하며, 후자는 수익자에 의한 권리의 남용(abuse of right)에 해당한다.²⁶⁾

이러한 적용요건에 대한 추가규정으로 제19조 2항에서는 1항에서 규정한 상상할 수 없는 근거(no conceivable basis)에 의한 청구를 ①

24) M. Sneddon, "The UNCITRAL Draft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Australian Business Law Review*, Vol. 23, 1995, p. 148.

25) UN Convention, Article 19(1).

26) 지급금지명령의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유엔협약의 제정단계에서 규정의 명확화를 위하여 사기와 권리의 남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러한 개념의 정의에 대한 각국의 국내법의 규정이 불일치하여 오히려 오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ric E. Bergsten, "A New Regime for International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 The UNCITRAL Draft Convention on Guaranty Letters", *The International Lawyer*, Winter 1993, p. 872.

보증신용장에서 정한 우발적 사건이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② 발행의뢰인의 근거계약상의 채무가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무효라고 선언된 경우, ③ 근거계약에 따른 채무가 의심할 바 없이 이행된 경우, ④ 근거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수익자의 고의적 비행에 의하여 방해된 경우, ⑤ 역보증(counter-guarantee)에 따른 청구에서 역보증이 관련된 보증신용장의 발행은행인 역보증의 수익자가 악의로 지급을 행한 경우 등의 다섯 가지 구체적 경우로 세분하고 있다.²⁷⁾ 유엔협약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근거에 의한 청구를 다섯 가지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이유는 상상할 수 없는 근거라는 다소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부작용, 예를 들어 발행의뢰인이 이러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여 정당한 근거에 의한 청구에 대해서도 지급금지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된다.²⁸⁾

(3) 지급금지명령의 적용제한

법원은 금지명령의 발령에 있어서 법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²⁹⁾ 법원은 제19조 1항에 명시된 지급의무의 예외사유 및 범죄의 목적으로 보증신용장이 사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지급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가 제기되더라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없음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³⁰⁾ 이러한 규정은 법원에 의한 금지명령의 허가요건을 강화하여 법원에 대한 금지명령의 신청

27) UN Convention, Article 19(2).

28) Stoufflet 교수는 유엔협약 제19조 2항의 상상할 수 없는 청구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의 구체적인 경우는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판례법(case law)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Jean Stoufflet, "Fraud in Documentary Credit, Letter of Credit and Demand Guaranty", Dickinson Law Review, Vol. 106, 2001, p. 24.

29) UN Convention, Article 20(2).

30) UN Convention, Article 20(3).

과 그에 따른 명령의 허가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보증신용장거래에 대한 법적 절차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보증신용장거래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로 생각된다.

3. 미국 통일상법전의 관련규정

(1) 지급금지명령의 당사자

1995년에 개정된 미국 통일상법전(UCC)³¹⁾은 제5-109조 사기와 위조(Fraud and Forgery)의 (b)항에서 발행의뢰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수익자의 부당한 지급청구에 대하여 잠정적 또는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³²⁾ 본 조항은 지급금지명령의 신청의 권리를 발행의뢰인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정당한 재판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지급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본 조항은 지급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로 발행의뢰인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명시적으로 발행은행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발행은행도 법원에 지급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³³⁾ 특히 독자적 지급거절에 따라 발행은행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을 감안한다면 발행은행이 지급거절에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급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1) 원래 화환신용장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추후 보증신용장을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UCP와는 달리 UCC는 적용대상에 보증신용장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적용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여 적용대상에 보증신용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Katherine A. Barski, "An Analysis of the Recent Revision to Article Five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Letters of Credit", *Commercial Law Journal*, Summer 1996, p. 179.

32) UCC 1995 § 5-109(b). 동조 (a)항에서는 수익자의 부당한 지급청구에 대한 발행은행의 독자적 지급거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33) *Summit Insurance Co. v. Central National Bank* [624 S.W.2d 222 (1981)] 사건과 같이 발행은행이 직접 법원에 지급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재판관할권이 있는 법원(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즉 관할법원을 통해서 지급금지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할법원이란 보증신용장의 발행은행의 지급의무에 관한 대인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장관련법규에서는 재판관할권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보증신용장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국내법의 재판관할권의 원칙에 따라 발행은행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법원, 즉 발행은행 소재지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될 것이다.³⁴⁾

(2) 지급금지명령의 적용요건

제5-109조 (b)항은 지급금지명령의 적용요건을 서류가 위조 또는 중대한 사기의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와 제시에 대한 지급이 발행은행이나 발행의뢰인에 대한 수익자의 실질적인 사기를 조장하게 될 경우로 대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① 수익자의 사기에는 중대성(materiality)이 있어야 한다. 동 규정에는 사기의 중대성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공식주석에 의하면 법원이 중대성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수익자에 의한 중대한 사기는 수익자가 지급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럴듯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및 실제로 지급청구의 권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³⁵⁾ 보증신용장의 경우 수익자의 부당한 지급청구는 대부분 지급청구권의 근거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이러한 요건은 보증신용장에 적합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② 거래상의 사기에는 근거거래상의 사기가 포함된다. 공식주석에

34) Matti Kurkela, *Letters of Credit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UCC, UCP and Law Merchant*, Oceana Publications, Inc., 1985, p. 38.

35) Material fraud by the beneficiary occurs only when the beneficiary has no colorable right to expect honor and where there is no basis in fact to support such a right to honor; American Law Institute, *UCC Revised Article 5 Letters of Credit*, 1995, Article 5-109, Official Comments 1.

의하면 중대한 사기에 대한 주장이 있을 경우, 서류가 사기적인지 또는 수익자가 사기를 저질렀는지, 또는 그러한 사기가 중대한 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법원은 근거거래를 조사하여야만 한다고 명시하여 사기의 대상으로서의 거래에 근거거래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³⁶⁾ 보증신용장의 경우 근거거래의 불이행에 따라 지급청구가 행해지므로 수익자의 부당한 지급청구는 근거거래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근거거래의 조사에 의하여 그 부당성이 쉽게 입증될 수 있으므로 이 요건은 보증신용장에 대한 지급금지명령의 적용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③ 제3자에 의한 사기도 적용요건에 포함된다. 적용요건인 서류가 위조되거나 사기의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 또는 서류제시에 대한 지급이 수익자의 실질적인 사기를 조장하게 되는 경우 중에서 후자는 수익자에 의한 사기로서 그러한 행위의 주체가 수익자이어야 하나, 전자는 위조서류 또는 사기서류를 작성한 주체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다. 즉, 서류상의 사기가 수익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행해지고 수익자가 선의로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도 수익자에 대한 지급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수익자보다는 발행의뢰인에게 유리한 규정으로 수익자는 제3자가 작성한 서류의 진정성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³⁷⁾ 보증신용장의 경우 대부분의 지급청구서류는 수익자 본인에 의하여 작성되므로 이 요건은 보증신용장거래에서는 큰 실효성을 가지지 않는다.

36) American Law Institute, UCC Revised Article 5 Letters of Credit, 1995, Article 5-109, Official Comments 1.

37) 이러한 규정은 제3자에 의한 사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서류를 제시한 선의의 수익자는 사기에 대하여 면책된다는 United City Merchants (Investments) Ltd. v. Royal Bank of Canada [1 Lloyd's Rep. 604 (1980)] 사건의 판결과는 상반된다.

(3) 지급금지명령의 적용제한

제5-109조 (b)항에 의하면 상기의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지급금지명령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지급금지명령이 허용되도록 규정하여 그 적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한요건으로는 ① 준거법(law applicable)³⁸⁾에서 지급금지명령을 금지하지 않아야 하며, ② 지급금지명령의 허용으로 인하여 수익자, 발행은행 또는 지정은행이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③ 주법(state law)에 따라 당사자에게 구제의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④ 발행의뢰인은 법원에 위조 또는 중대한 사기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즉, 이러한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발행의뢰인의 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구제를 허용할 수 없다.

과거 지급금지명령을 다루는 법원에서 이러한 요건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한 경우도 있으나, 법원에 따라 적용요건이 서로 상이하여 사기원칙의 적용에 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 것이 사실이다. UCC는 이러한 요건이 전부 충족될 것을 규정하여 적용요건의 통일화를 기하고 있는데, 이는 지급금지명령의 적용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적용요건의 엄격한 설정은 사기원칙에 따른 지급금지명령의 허용 기준을 강화하여 보증신용장거래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려는 의도로 생각된다.³⁹⁾

38) 보증신용장에 준거법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보증신용장이 발행된 국가, 즉 발행은행의 소재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George P. Graham, "International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and Choice of Law: So Whose Law Should Apply Anyway?", *The Wayne Law Review*, Vol. 47, Spring, 2001, pp. 213~218.

39) Gao Xiang & Ross P. Burkley, *op. cit.*, p. 688.

IV. 지급금지명령 적용 사례

1. 지급금지명령이 허용된 사례

(1) Metrobility Optical Systems, Inc. v. Hecop III 사건⁴⁰⁾

임대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임대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증신용장이 발행되었다. 임대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파산하였고, 임대인은 발행은행에 지급을 요청하자 임차인이 법원에 지급금지명령을 신청하였다. 임대인은 임대계약에 임차인이 파산할 경우 임대계약이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향후의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지급금지명령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임차인은 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조항은 효력이 없어 임대계약은 종료되지 않으므로 지급청구의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임차인의 주장과 같이 파산법에 따라 임대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존속하므로 임대계약의 종료에 관한 통지는 무효이며, 임대인은 보증신용장에 의한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지급금지명령을 허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파산에 대한 준거법으로서의 파산법을 적용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급금지명령을 허용하였는데, 지급금지명령의 허용에 있어서 수익자의 지급청구권의 근거가 주요한 적용기준이 되며 그 판단은 준거법에 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40) 38 Bankr. Ct. Dec. 156 (2001).

(2) Brenntag International Chemicals, Inc. v. Norddeutsche
Landesbank GZ 사건⁴¹⁾

화학제품의 매매계약에서 발행의뢰인이 기한부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행은행에 지급을 청구하는 조건의 보증신용장이 발행되었다.⁴²⁾ 수익자가 제시한 불이행진술서는 송장일자로부터 4일 후에 만기가 경과된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실제로 서류의 작성시점은 만기일 이전으로서 서류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수익자는 만기일 경과 이전에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싱가포르의 관행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는 뉴욕의 은행관행은 아니며 허위로 작성된 불이행진술서의 수리는 보증신용장의 특성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지급금지명령을 허용하였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서류상의 사기에 관한 사례로서 본 건의 담당 법원이 인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는 서류가 없는 것과 동일하다는 판시와 같이 사기서류는 독립성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은 명백하다.⁴³⁾

(3) Prairie State Bank v. Universal Bonding Insurance Co.
사건⁴⁴⁾

건설공사에 따른 이행보증의 목적으로 발행된 보증신용장거래에서 수익자가 지급을 청구하였고 발행은행은 수익자의 지급청구가 발행의뢰인과 무관하고 보증신용장의 당사자도 아닌 회사와 연관된 문제로

41) 70 F.Supp.2d 399 (1999).

42) 물품매매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유형의 보증신용장을 상업보증신용장 (commercial standby credit)이라 하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를 보증한다는 점에서 화환신용장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증신용장이라 할 수 있다; 이상훈, 전계논문, 252~253면.

43) Falsified documents are the same as no documents at all; Voest-Alpine International Corp. v. Chase Manhattan Bank, A707 F.2d 680 (2d Cir. 1983).

44) 24 Kan.App.2d 740 (1998).

인한 청구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거절하였다. 법원은 수익자의 지급 청구가 전체의 거래를 저해할 정도의 현저한 사기라고 판시하면서 지급금지명령의 발령을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수익자의 지급청구에 정당한 근거가 없음을 주요한 이유로 하여 법원이 지급금지명령을 적용한 사건이다.

(4) Western Security Bank v. Superior Court of Los Angeles
County 사건⁴⁵⁾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만기에 발행의뢰인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이행되는 조건으로 보증신용장이 발행되었다. 만기에 발행의뢰인이 상환불능이 되자 수익자는 발행은행에 지급을 청구하였고 발행의뢰인이 법원에 지급금지명령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수익자의 지급청구는 향후 발행의뢰인의 파산처리 과정에서의 부족금의 상환을 위한 것으로서 이는 보증신용장의 발행 목적과는 다르며 거래상의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지급금지명령을 허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거계약에 대한 완전한 불이행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근거로 수익자의 지급청구를 거래상의 사기로 간주하여 지급금지명령을 인정하였다.

(5) Seguin Savings Association v. Vista Verde Plaza Joint
Venture 사건⁴⁶⁾

건설계약에 따른 이행보증을 위하여 보증신용장이 발행되었으며, 이후 발행의뢰인이 법원에 지급금지명령을 신청하였다. 발행의뢰인은 수익자가 대출을 받지 않아 건설공사가 중지되었음에도 지급을 청구하

45) 26 Cal.App.4th 1441 (1993).

46) 7 UCC Rep. Serv.2d (Callaghan) 862 (1988).

는 것은 수익자의 사기라고 주장하였으며, 수익자는 독립성의 원칙을 근거로 발행의뢰인의 불이행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항변하였다. 법원은 수익자의 대출 불이행에 따른 계약위반으로 발행의뢰인의 추가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발행의뢰인의 불이행을 초래한 수익자의 지급청구를 거래상의 사기로 인정하여 발행의뢰인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기원칙은 자신의 불법행위(wrongful act)로부터 수익을 얻고자 기도하는 수익자로부터 발행의뢰인을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판시하고 수익자의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의 취득이 지급금지명령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유효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⁴⁷⁾

(6) Philip Brothers, Inc. v. Oil Country Specialists, Ltd. 사건⁴⁸⁾

파이프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미판매분에 대한 수수료 지급의무의 보증을 위하여 보증신용장이 발행되었으며, 실제 인도된 파이프와 계약명세와의 상이를 이유로 계약이 취소되면서 수익자가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발행의뢰인이 법원에 지급금지명령을 구하였다. 발행의뢰인은 파이프의 상당량에 하자가 있어 근거계약과 보증신용장의 목적에 반하는 근거거래에서의 사기임을 주장하였으며 수익자는 불량품은 관행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불량이므로 지급금지명령의 허용이 오히려 보증신용장의 이용목적에 좌절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파이프에 대한 검사결과 대부분이 불량이거나 수리를 요하는 물품으로 전체 재고품이 거의 무가치하므로 거래상의 사기로 간주될 수 있으며, 지급금지명령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이는 다른 계약의 불

47) 유사한 사례인 Penn State Construction, Inc. v. Cambria Savings & Loan Association [519 A.2d 1034 (1987)] 사건에서 법원은 발행의뢰인의 불이행을 초래한 수익자의 지급청구에 응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은행도 수익자의 사기의 당사자가 된다고 판시하고 지급금지명령을 허용하였다.

48) 709 S.W.2d 262 (1987).

이행으로 이어져 발행의뢰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근거로 지급금지명령을 허용하였다.

이 사건은 근거계약의 대상물품에 대한 하자를 거래상의 사기로 간주하여 지급금지명령 허용의 근거로 인정한 사건으로 상업보증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계약물품의 하자가 쟁점이 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일례이다.

(7) Itek Corp. v. First National Bank of Boston 사건⁴⁹⁾

미국기업인 매도인과 이란정부와의 광학장비의 매매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신용장이 발행되었다.⁵⁰⁾ 이후 이란과 미국의 국교가 단절되면서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발행의뢰인은 수익자에 대한 지급청구를 막기 위하여 법원에 발행은행에 대한 지급금지명령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발행의뢰인이 이란의 법원을 통한 소송이 불가능하고 다른 적절한 구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회복불능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시하며 지급금지명령을 허용하였다.

이 사건은 소위 이란 사건(Iranian cases)의 하나로 이는 1970년대 후반 미국과 이란의 외교관계의 악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이란의 정부 또는 국영기업과의 건설 또는 공급계약과 관련된 보증신용장에 따른 이란 수익자의 지급청구를 우려한 미국 발행의뢰인이 미국법원에 지급금지명령을 신청하는 소송을 연속으로 제기한 일련의 사태를 의미한다. 이란 사건은 보증신용장거래에서 정치적 사유와 불가항력에 근거한 수익자의 지급청구와 지급금지명령의 적용이

49) 730 F.2d. 19 (1st Cir. 1984).

50) 이란 사건은 보통 4자간 보증(four-way security)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당시 미국과 중동국가와의 무역관행으로서 미국측 매도인과 이란측 매수인의 매매계약에 대한 보증으로 이란측 은행으로부터 이행보증증권(performance guaranty bond)을 교부받아 매수인에게 제출하고, 이행보증증권에 대한 보증으로 매도인이 미국측 은행을 통하여 이란측 은행을 수익자로 하는 보증신용장을 발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라는 문제점을 재조명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란 사건을 담당한 미국 법원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금지명령의 적용에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지급금지명령을 허용한 대부분의 사건은 미국 발행의뢰인이 이란 법원을 통한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이란 수익자의 지급청구가 미국 발행의뢰인에게 회복불능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⁵¹⁾

2. 지급금지명령이 허용되지 않은 사례

(1) New Orleans Brass L.L.C. v. Whitney National Bank 사건⁵²⁾

아이스하키 팀의 운영을 위한 경기장의 임대계약에서의 임대료 지급에 대한 보증으로 보증신용장이 발행되었고, 임대료가 미지급되자 수익자가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발행의뢰인은 수익자의 지급청구서류의 부실기재와 경기장 시설의 미비 및 임대료에 대한 분쟁 등을 근거로 수익자의 사기를 주장하며 법원에 지급금지명령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독립성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발행의뢰인의 주장은 임대계약의 위반이 될 수는 있으나, 이는 지급금지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기로 볼 수는 없으며 지급에 대한 유보는 보증신용장의 목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며 지급금지명령을 허용하지 않고 수익자의 지급청구권을 인정하여 발행은행의 지급을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1995년 개정 UCC가 적용된 사건으로 법원은 독립성의 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제5-109조에 규정된 지급금지명령의 적용요건으로서의 중대한 사기의 범위는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⁵³⁾

51) Mark P. Zimmet. "Standby Letters of Credit in the Iran litigation: Two Hundred Problems in Search of a Solution",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Vol. 16, 1984, p. 943.

52) 818 So.2d 1057 (2002).

(2) Synergy Center, Ltd. v. Lone Star Franchising, Inc. 사건⁵⁴⁾

음식점의 영업을 위한 점포의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임대료(rent)의 지급을 위한 보증의 목적으로 보증신용장이 발행되었다. 음식점이 휴업하자 임대인은 임대계약조항을 근거로 임대계약의 종료와 'acceleration clause'⁵⁵⁾에 따른 잔여기간의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면서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발행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것이라고 통지하였고 이에 발행의뢰인이 법원에 지급금지명령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임대조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익자의 지급청구를 금지할 근거로는 부족하며, 'acceleration clause'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의 중대한 사기를 구성할 정도의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수익자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3) 3COM Corp. v. Banco de Brasil, S.A. 사건⁵⁶⁾

독점판매계약에 따른 판매대금의 지급의무를 보증하기 위한 보증신용장이 발행되었고, 발행의뢰인이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수익자가 지급을 청구하였다. 발행의뢰인은 수익자가 제시한 불이행진술서에는 수익자가 작성한 송장금액에 따라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의 송장은 수익자의 구매대리인의 명의로 작성되었으므로 이는 수익자의 사기적인 지급청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대

53) 본 건에서 Kirby 판사는 보증신용장거래에서 지급금지명령이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① 근거계약에서 수익자의 지급청구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② 수익자가 지급을 청구할 명백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 ③ 수익자의 지급청구가 실제로 근거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 ④ 독립성을 목적에 비추어 이를 배제할 정도로 수익자의 지급청구가 전체의 거래를 저해할 경우; Ibid, p.1062.

54) 2001 Tex.App.LEXIS 8070 (2001).

55) 'acceleration clause'란 금전지급에 관한 계약조항에서 계약위반 또는 당사자간에 약정된 특정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급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채무 전체의 지급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조항을 의미한다.

56) 171 F.3d 739 (1999).

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송장을 작성한 경우 관행적으로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지급금지명령을 허용할 정도의 충분한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발행의뢰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수익자의 지급청구서류에 경미한 부실기재가 있었으나 업계의 관행을 근거로 이를 중대한 사기로 간주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⁵⁷⁾

(4) Southern Energy Homes, Inc. v. AmSouth Bank of Alabama
사건⁵⁸⁾

독일에서의 주택단지 건설계약의 이행에 관한 4자간 보증의 방식으로 보증신용장이 발행되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용의 상승으로 미국 건설회사는 계약가격으로 이행이 불가능함을 통지하였고 이행일자가 경과되었다. 당사자간에 계약위반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는 동안 수익자인 독일 은행의 지급청구가 행해지자 미국 발행의뢰인이 미국 법원에 지급금지명령을 신청하였다. 발행의뢰인은 자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건설계약의 불이행이 없으며 선수금도 반환하였으므로 은행보증에 따른 지급은 부당하며 따라서 수익자의 지급청구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수익자는 근거계약과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사기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독일 시공회사는 보증신용장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항변하며 지급이행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당사자간에 독일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계약조항이 있으므로 발행의뢰인은

57) 송장의 하자가 쟁점이 된 유사한 사례인 *E&H Partners v. Broadway National Bank* [39 F.Supp.2d 275 (1998)] 사건에서 발행의뢰인은 송장번호의 인증되지 않은 정정을 근거로 서류의 위조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보증신용장조건에는 송장번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지급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송장번호의 변경은 지급을 금지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58) 709 So.2d 1180 (1998).

독일법원에서 독일 시공회사의 사기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적절한 법적 구제조치가 존재하므로 발행은행의 지급이행은 발행의뢰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며 지급금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발행의뢰인이 지급금지명령이 아니라도 다른 법적 구제조치를 통하여 충분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근거에서 독립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지급금지명령을 허용하지 않았다.

(5) CE Casecan Water & Energy Co., Inc. v. Korea First Bank
사건⁵⁹⁾

한국의 제일은행이 발행은행으로 개입된 사건으로 필리핀에서의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주)한보의 계약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제일은행이 보증신용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주)한보가 파산함에 따라 추가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지자 수익자가 계약을 종료하고 지급을 청구하였다. (주)한보는 수익자가 이행된 작업에 대한 보수를 고려하지 않고 건설 지연 및 새로운 건설업자의 모색 비용까지 포함하여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였으므로 부당한 지급청구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증신용장에는 수익자의 손해액에 대한 상세한 증거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불이행이 있었으므로 수익자는 손해를 보상받을 권리를 가지며, 손해액에 관한 분쟁은 발행은행과는 무관한 근거계약의 문제라고 판시하면서 지급금지명령을 허용하지 않고 발행은행에게 지급이행을 판결하였다.⁶⁰⁾

59) 33 UCC Rep. Serv.2d 871 (1997).

60) 수익자의 과도한 지급청구가 쟁점이 된 유사한 사례인 *Mennen v. J. P. Morgan & Co., Inc.* [91 N.Y.2d 13 (1997)] 사건에서 법원은 실질적인 사기의 부존재를 근거로 지급금지명령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소수의견으로 *Titone* 판사는 초과금액에 대하여 발행은행은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6) Xantech Corp. v. Ramco Industries, Inc. 사건⁶¹⁾

구매대금의 지급에 따른 보증신용장거래에서 구매대금이 전액 지급되었음을 주장하며 발행의뢰인이 법원에 지급금지명령을 구하였으나, 사건을 담당한 Ratliff 판사는 근거계약에서의 사기가 아니라 신용장거래에 사기가 개입된 경우에만 사기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개정 이전의 UCC의 규정을 기준으로 거래상의 사기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여 근거계약의 사기를 배제하고 있으나,⁶²⁾ 개정 UCC에서는 거래상의 사기에 근거거래를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경우 본 건과는 달리 지급금지명령이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7) Lloyd's v.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사건⁶³⁾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지급금지명령의 신청을 위한 소송에서 수익자의 사기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가 아닌 발행은행에게 있으며, 발행은행이 이를 입증하는데 실패하였으므로 지급금지명령은 허용될 수 없으며 발행은행의 지급이행을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영국의 사례로 수익자의 사기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가 아니라 지급금지를 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데, 영국 법원의 경우 미국 법원에 비하여 독립성의 원칙을 엄격히 고수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⁶⁴⁾

61) 643 N.E.2d 918 (1994).

62) 1952년 UCC 1952 제5-114조 (2)항에는 거래상의 사기에 있어서의 거래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근거거래가 포함되는 가에 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예를 들어,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v. Bank of San Francisco [817 F.2d 1395 (1987)] 사건에서 법원은 거래상의 사기는 근거거래의 사기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여 본 건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63) 2 Lloyd's Rep. 579 (1993).

64) 김순자, 전계논문, 110면.

(8) APV Baker, Inc. v. Harris Trust & Savings Bank 사건⁶⁵⁾

이 사건은 이란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으로 1991년 2월에 미국 내의 이란자산에 대한 동결조치가 철회되면서 발행의뢰인이 법원에 다시 지급금지명령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발행의뢰인이 주장하는 사기는 신용장과는 전혀 무관한 근거거래와 관련된 것이며, 과거의 다른 이란 사건에서는 이란 기업이 당사자로 개입되었으나 본 건에서는 이란측 피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의 상황에서는 제정법에 의한 충분한 구제가 가능하므로 발행의뢰인에게 회복불능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지급금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9) Aetna Life & Casualty Co. v. Huntington National Bank 사건⁶⁶⁾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발행의뢰인이 수익자의 고의적인 사기가 아니라 단지 수익자의 고객이 사기적 행위에 관계되었음을 입증한 것일 뿐이며, 지급금지명령의 적용요건으로서의 거래상의 사기는 수익자에 의한 고의적 사기에 한정되므로 발행의뢰인이 주장하는 사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0) FDIC v. Bank of San Francisco 사건⁶⁷⁾

법원은 수익자의 사기가 행해졌음을 인정했으나 본 건은 사기를 행한 수익자가 아니라 사기와 무관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⁶⁸⁾가 개입되어 지급을 청구한 것이므로 지급청구서류 이외의 사기를 이유

65) 761 F.Supp. 1293 (1991).

66) 934 F.2d 695 (1991).

67) 817 F.2d 1395 (1987).

68)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는 미국 연방정부의 소유회사 중의 하나로 은행예금의 보험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로 발행은행은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을 판시하고 지급금지명령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준거법에 따라 FDIC에게 선의의 소지인(holder in due course)의 지위를 부여하여 수익자에 의한 서류상의 사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급금지명령을 적용하지 않았다.

V. 시사점 및 결론

수익자가 작성한 지급청구서류에 의하여 지급이 행해지는 보증신용장거래의 특성상 수익자의 부당한 지급청구에 대한 대책은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해결책 중의 하나가 법원의 지급금지명령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증신용장거래에서 지급금지명령의 실질적인 적용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검토 결과 보증신용장거래당사자들이 유의하여야 할 몇 가지 시사점 및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독립적 보증 및 보증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 및 미국 통일상법전에서 보증신용장거래에의 지급금지명령의 적용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관련분쟁을 다루는 법원에 보다 명확한 법적기준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증신용장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범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증신용장통일규칙에 관련규정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은 그 적용에 장애가 될 수 있어 향후의 개정에서 관련규정이 설정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사례분석에 의하면 법원은 지급금지명령의 적용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신용장거래의 근간인 독립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최소화하여 보증신용장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급청구서류의 무가치성으로 인하여 신용장대금을 달리 보전할 수 없는 보증신용장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법원은 지급금지명령의 적용에 있어서 보다 완화된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급금지명령을 허용한 대부분의 사례에서 법원은 수익자의 지급청구의 부당성을 판단에 있어서는 지급청구의 실질적 근거의 여부를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지급금지명령의 적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발행은행의 지급으로 인한 발행의뢰인의 피해에 대하여 지급금지명령 이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발행의뢰인은 지급금지명령의 신청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의 입증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소송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방은 최선의 치료인 것과 같이 발행의뢰인은 수익자의 부당한 지급청구가 행해지기 이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수익자 이외의 제3자가 발행하는 서류를 요구하여 서류요건을 강화하거나 또는 지급청구 이전에 발행의뢰인에게 지급청구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지급청구고지조항을 삽입하는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원진, 「신용장론」, 제4판, 박영사, 2004.
- 김순자, “스탠드바이 신용장거래에서 사기서류배제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8.
- 이상훈, “보증신용장의 활용을 위한 법규적 접근”,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28권 제2호, 2003.
- Barnes, James G. & Byrne, James E., “Letters of Credit: 1998 Cases”, *The Business Lawyer*, Vol. 54, 1999.
- Barski, Katherine A., “An Analysis of the Recent Revision to Article Five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Letters of Credit”, *Commercial Law Journal*, Summer 1996.
- Bergsten, Eric E., “A New Regime for International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 The UNCITRAL Draft Convention on Guaranty Letters”, *The International Lawyer*, Winter 1993.
- Burkley, Ross P. & Xiang, Gao, “The Development of the Fraud Rule in Letter of Credit Law: The Journey so far and the Road ahead”,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23, Winter 2002.
- Byrne, James E., “UCC Survey: Letter of Credit”, *Brooklyn Law Review*, Vol. 43, 1988.
- Carlson, David Gray & Widen, William H., “Letters of Credit, Voidable Preference, and the Independence Principle”, *The Business Lawyer*, Vol. 54, 1999.
- Dolan, John F., “Analyzing Bank Drafted Standby Letter of Credit Rules,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ISP98)”, *Wayne Law*

- Review, Vol. 45, 2000.
- Driscoll, Richard J., "The Role of Standby Letters of Credit in International Commerce : Reflection after Iran",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0, 1980.
- Graham, George P., "International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and Choice of Law : So Whose Law Should Apply Anyway?", *The Wayne Law Review*, Vol. 47, Spring, 2001.
- Kozolchik, Boris,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in the Americas*, Matthew Bender & Company, 1976.
- Kurkela, Matti, *Letters of Credit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UCC, UCP and Law Merchant*, Oceana Publications, Inc., 1985.
- Sigrist, P., *Standby Letters of Credit and Fraud*,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990.
- Sneddon, M., "The UNCITRAL Draft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Australian Business Law Review*, Vol. 23, 1995.
- Stern, Michael, "The Independence Rule in Standby Letters of Credit",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 52, Winter 1985.
- Stoufflet, Jean, "Fraud in Documentary Credit, Letter of Credit and Demand Guaranty", *Dickinson Law Review*, Vol. 106, 2001.
- Wunnicke, Brooke & Wunnicke, Diane B., *Standby Letters of Credit*, John Wiley & Sons, Inc. 1989.
- Zimmett, Mark P., "Standby Letters of Credit in the Iran litigation: Two Hundred Problems in Search of a Solution",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Vol. 16, 1984.

ABSTRACT

Case Studies on Application of Injunction to the stand-by Credit Transactions

Won-Jin, Kang

Sang-Hun, Lee

Recently stand-by credits are using as surety devices in various global business transactions including sale of goods. Stand-by credits have lots of merits but simultaneously have high possibility of improper demand by the beneficiary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cuments required. So so-called fraud rule has developed as a solution to the improper demand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And the actual way of the fraud rule is the injunction by the competent cour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injunction in stand-by credit transactions by means of case studies. For this purpose, the author examined the concept of the injunction, necessity of the injunction in stand-by credit transactions and the cases of injunction granted and injunction denied.

Firstly, the courts have legal standard of the application of injunction due to the legislation of the relative articles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and the Uniform Commercial Code. Secondly, the courts have taken a negative attitude granting injunction in order to observe the independence principle. Thirdly, the courts have a tendency to grant injunction when the demand has no conceivable basis and the applicant

will suffer irreparable injury without injunction. Finally, like the saying "prevention is the best cure", the applicant always pays attention with reasonable care before improper demand by the beneficiary.

Key Words : stand-by Credits, Injunction, Fraud Rule